

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유 확대(안 제49조)

장년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이더라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인 임금의 감액으로 인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안 제51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마.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확대(안 제59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재·교구비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기본교육 보육활동비)'로 확대하고자 함

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기에 동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취업의 인정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코오롱글로벌(주)(윤창운), ② (주)비룡씨에이치씨(박광구),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 032-420-9302, ② 033-261-9495, ③ 031-910-0114

2. 명칭 :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창호 유리사이에 설치된 중공층의 자연환기로 조절하는 슬립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외측 유리와 내측 유리사이에 중공층이 설치된 슬립형 이중외피 창호로서, 하계에 창호 유리사이에 20mm 두께를 갖는 중공층의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통해서 자연환기를 이용하여 유리의 표면온도를 낮추면서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줄여 차양설치 없이 냉방부하를 저감시키고, 동계에는 중공층의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밀폐시켜 창호의 단열성을 높이면서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줄여 난방부하의 상승을 억제하는 창호 기술

<범위>

하계에 창호의 외측 유리와 내측 유리사이에 설치된 20mm 두께의 중공층에 결합된 상하부의 개구부를 개방하여 자연환기로 중공층의 가열된 열을 외부로 배출시켜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줄이고, 동계에는 중공층에 결합된 상하부의 개구부를 밀폐시켜 유리의 단열성을 높여서 외부로 열손실을 억제하여 건물의 연간 냉난방 부하를 저감시키는 슬립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4호

관보 제19345호(2018.9.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9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93))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